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

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)

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	상 호 (성명)	사 업 자 등 록 번 호 (생년월일)
	사 업 장 (주소또는가소)	
조 사 대 상 세 목		
조 사 대 상 과 세 기 간 (자료요청 대상기간)		년 월 일 ~ 년 월 일
조 사 기 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
조 사 사 유		
조 사 제 외 대 상		세목: 과세기간: 범위:
부 분 조 사 범 위		

만약 귀하(귀사)에게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

1. 화재,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
2.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,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
3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,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조사 시작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·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